

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925
----------	------

2024년 6월 25일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I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4. 5.27
- 제안자 : 서울특별시장
- 회부일자 : 2024. 5.30
- 상정일자 :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(2024. 6.20)
 - 안건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 및 답변
 -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(2024. 6.24)
 - 원안가결

Ⅱ. 제안설명의 요지 (기획조정실장 김태균)

- 의안번호 제1925호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(안) 등 9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(안)에 대한 제안설명으로,
-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변경안 등 7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예치금을 회수하는 등 재무활동 조정으로 인한 2024년도 수입·지출계획의 변경으로, 총 853억 원의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증액되었음
- 성평등가족기금 운용계획변경안 등 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무활동으로 인한 6억원의 기금운용계획 변경 외에, 행정운영경비에서 16백만 원을 감액하고, 정책사업 37백만 원을 편성하고자 함

Ⅲ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(수석전문위원 엄지운)

1. 제안경위

- 의안번호 제1925호, **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**은 2024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것임

2.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검토

가. 제안이유

- 1).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2)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. 2023년 결산에 따라, 「예치금」이 당초 5,316백만원에서 8,172백만원으로 2,856백만원 증가하여, 2024 회계연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5,316백만원에서 8,172백만원으로 2,856백만원 증가하였음
 - 증가사유 : ‘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’ 집행잔액(2,515백만원), 이자수입(204백만원) 및 융자금 원금수입(191백만원) 증가, 기타수입(14백만원), 기본경비 집행잔액(11백만원),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(△79백만원)
- 2). 이에, 지출계획상 「여유자금 예치」 금액이 당초 511백만원에서 3,367백만원으로 2,856백만원 증액(559.4%)되었음

[2024년 수입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장·관·항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7,931	10,787	2,856	36.0
세 외 수 입	225	225	-	-
경 상 적 세 외 수 입	225	225	-	-
이 자 수 입	225	225	-	-
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	7,706	10,562	2,856	37.1
보 전 수 입 등	7,069	9,925	2,856	40.4
용 자 금 원 금 수 입	1,753	1,753	-	-
예 치 금 회 수	5,316	8,172	2,856	53.7
내 부 거 래	637	637	-	-
예 탁 금 및 예 수 금	637	637	-	-

[2024년 지출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 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7,931	10,787	2,856	36.0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7,400	7,400	-	-
장 애 인 단 체 및 사 업 지 원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7,400	7,400	-	-
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	7,400	7,400	-	-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511	3,367	2,856	559.4
보 전 지 출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511	3,367	2,856	559.4
여 유 자 금 예 치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511	3,367	2,856	559.4
기 타	20	20	-	-
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20	20	-	-
기금관리비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20	20	-	-

3. 검토의견

-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은 '23 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라 수입계획중 예치금회수가 증가(28억 5,600만원)하여 수입계획을 변경하고, 수입계획과 연동하여 지출계획중 여유자금 예치(28억 5,600만원)에 반영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임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1)는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정하고 있음
 - 동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출계획중 정책사업인 일반예산(재무활동)을 당초 지출계획(5억 1,100만원)보다 559.4%, 28억 5,600만원을 증액하여 변경(33억 6,700만원)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에 해당됨

〈표 3-1〉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(단위 : 백만원, %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 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 감 (C=B-A)	증 감 륜 (D=C/A)
지출합계	7,931	10,787	2,856	36.0
장애인복지증진사업지원	7,400	7,400	-	-
일반예산(재무활동)	511	3,367	2,856	559.4
보전지출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511	3,367	2,856	559.4
여유자금예치 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511	3,367	2,856	559.4
행정운영경비 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20	20	-	-

※ 자료근거 : ①2024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중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지출계획,
②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('24. 5.27) 재구성

1)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- ① 생략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이하 생략)

○ 동 계정의 운용계획 변경안은 '23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여유자금을 '24년도 수입계획에 반영하고, 이와 연동하여 여유자금을 지출계획중 예치금으로 적립하고자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의 운용계획을 변경 요청한 것임

- 동 기금의 설치근거인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에 명시된 기금의 용도²⁾ 등을 고려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같이 지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2)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」제6조(장애인복지계정)

②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.

1. 장애인 사회참여활동 및 여가활동 지원
2. 장애인단체의 지도·육성 및 건전한 시민운동 지원
3. 장애인 문제 및 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
4. 장애인 관련 학술대회 등 행사 지원
5.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시설종사자 교육
6. 저소득 장애인의 자활 지원
7. 장애인복지계정의 자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
8. 장애인의 교육 및 직업훈련사업
9.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생략」

VI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

1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2. 조정소위원회 심사경과

가. 소위원회

○ 위원구성 :

- 위 원 장 : 이병도(도시계획균형)
- 부위원장 : 신복자(기획경제), 박승진(주택공간)
- 소위원회 : 구미경(행정자치), 박수빈(행정자치)
김재진(환경수자원), 김규남(문화체육관광)
유만희(보건복지), 김 경(보건복지)
이상욱(도시안전건설), 신동원(주택공간)
박영한(도시계획균형), 이경숙(교통)
정지웅(교육), 전병주(교육)

※ '24년도 본예산 심사시 구성된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

나. 소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

○ 제1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1(금) 15:00 ~ 18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○ 제2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2(토) 14:30 ~ 18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○ 제3차 소위원회

- 일 시 : 2024. 6.23(일) 15:00 ~ 2024. 6.24(월) 03:00
- 장 소 :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
- 내 용 :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조정

VII. 부대의결 : 「해당 없음」

VIII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 (2024. 6.24)

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(장애인복지계정)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192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5월 27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여유자금 예치금이 증가함에 따라 2024년 수입·지출계획이 변경됨
- 나. 이에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1조 규정에 따라, 2024년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2023년 결산에 따라, 「예치금」이 당초 5,316백만원에서 8,172백만원으로 2,856백만원 증가하여, 2024 회계연도 수입계획상 「예치금 회수」 금액이 당초 5,316백만원에서 8,172백만원으로 2,856백만원 증가하였음
 - 증가사유 : ‘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보증금 지원사업’ 집행잔액(2,515백만원), 이자수입(204백만원) 및 융자금 원금수입(191백만원) 증가, 기타수입(14백만원), 기본경비 집행잔액(11백만원), 예탁금 이자수입 감소(△79백만원)
- 나. 이에, 지출계획상 「여유자금 예치」 금액이 당초 511백만원에서 3,367백만원으로 2,856백만원 증액(559.4%)되었음

[2024년 수입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장·관·항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7,931	10,787	2,856	36.0
세 외 수 입	225	225	-	-
경 상 적 세 외 수 입	225	225	-	-
이 자 수 입	225	225	-	-
보 전 수 입 등 및 내 부 거 래	7,706	10,562	2,856	37.1
보 전 수 입 등	7,069	9,925	2,856	40.4
용 자 금 원 금 수 입	1,753	1,753	-	-
예 치 금 회 수	5,316	8,172	2,856	53.7
내 부 거 래	637	637	-	-
예 탁 금 및 예 수 금	637	637	-	-

[2024년 지출계획]

(단위 : 백만원)

정책사업 / 단위사업 / 세부사업	당초 (A)	기금운용 계획변경안 (B)	증감 (C=B-A)	증감률 (D=C/A)
총 계	7,931	10,787	2,856	36.0
장 애 인 복 지 증 진 사 업 지 원	7,400	7,400	-	-
장 애 인 단 체 및 사 업 지 원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7,400	7,400	-	-
장 애 인 전 세 주 택 지 원 사 업	7,400	7,400	-	-
일 반 예 산 (재 무 활 동)	511	3,367	2,856	559.4
보 전 지 출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511	3,367	2,856	559.4
여 유 자 금 예 치 (사 회 복 지 기 금 장 애 인 복 지 계 정)	511	3,367	2,856	559.4
기 타	20	20	-	-
행정운영경비(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)	20	20	-	-
기금관리비(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)	20	20	-	-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유명 (☎ 2133-7447)